P - 156 - 2017

하수슬러지 탄화공정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
2017. 5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0 작성자: 이근원, 오세천
- o 제·개정 경과
 - 2017년 4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o 관련규격 및 자료
 - 오세천, "하수슬러지 탄화공정의 유해·위험에 대한 연구", 연구원 2016-연구원-776,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16.
 - 神奈川縣産業技術センター, "廢棄物處理工程における火災 爆發事故解析", 2008.
 - 丸善株式會社, "廢棄物安全處理・リサイクルハンドブック", 2010.
 - 下水道新技術研究所, "汚泥由來の可燃性ガスと汚泥製品の安全對策に關する研究", 水道新技術研究所年報, 2005.

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교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7년 5월 22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하수슬러지 탄화공정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하수슬러지 탄화공정에서 발생하는 화재·폭발, 끼임(협착), 떨어짐(추락), 및 화상 등 재해 유형별 유해·위험요소를 파악하여,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하수슬러지의 탄화물을 생산하는 건조로, 탄화로, 열분해가스 연소로, 슬러지의 저장 및 이송설비 등의 설비로 구성되는 하수슬러지 탄화공정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건조로 (Dryer)"라 함은 하수슬러지 탈수케이크를 탄화로에 주입하기 이전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수슬러지 탈수케이크를 건조하는 설비를 말한다.
 - (나) "탄화로 (Carbonization Furnace)"라 함은 건조된 하수슬러지를 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열하여 하수슬러지를 열분해 함으로써 탄화물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.
 - (다) "열분해가스 연소로 (Combustor of Pyrolysis Gas)"라 함은 열분해가스를 탄화로의 열원으로 활용하고자 연소하는 설비를 말한다.
 - (라) "열분해가스 (Pyrolysis Gas)"라 함은 탄화로에서 하수슬러지가 열분해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말한다.
 - (라) "방산구 (Venting Panel)"라 함은 열분해가스 연소로의 내부압력 상승 시 내부 압력을 외부로 안전하게 분출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.

P - 156 - 201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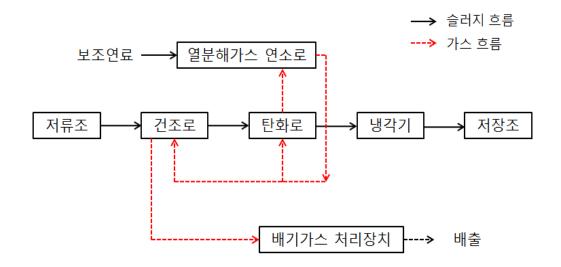
- (마) "파일럿버너 (Pilot Burner)"라 함은 주 버너의 점화를 확실히 하고 쉽게 하기 위한 별도의 보조버너를 말한다.
- (바) "덕트 (Duct)"라 함은 열분해가스의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거나 연소가 스 또는 하수슬러지의 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및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한 도관을 말한다.
- (사) "슬러지 저류조 (Sludge Storage Tank)"라 함은 유입슬러지를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.
- (아) "탄화물 저장조 (Carbide Storage Tank)"라 함은 탄화슬러지를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『산업안전보건법』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 규칙 및 『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』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하수슬러지 탄화시설의 공정흐름도와 유해·위험성

4.1. 탄화시설의 공정흐름도

- (1) 하수슬러지 탄화시설로 반입되는 슬러지는 저류조에 저장된 후 탄화로에 유입되기 전에 건조로를 통하여 수분이 제거된다.
- (2) 이후 수분이 제거된 슬러지는 탄화로에 유입되어 탄화과정을 거치게 되며, 이때 탄화과정에서 발생되는 열분해가스는 열분해가스 연소로에서 연소되어 탄화로 및 건조기의 열원으로 활용된 후 배기가스 처리장치를 거쳐 오염물이 제거된 후 대기로 배출된다.
- (3) 탄화로에서 생산된 탄화물은 자연발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냉각설비를 거친 후 탄화물 저장조로 유입된다.

P - 156 - 2017



<그림 1> 하수슬러지 탄화시설의 주요 공정 흐름도(예)

4.2. 탄화설비의 유해·위험성

(1) 건조로

- (가) 건조로의 기동 및 정지 시, 저 부하 운전 시 등의 경우에 기기의 내부, 기기의 출구에서 건조슬러지가 과 건조되어, 발열 및 발화에 의해 화재·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.
- (나) 건조슬러지가 분말 상태가 되어 점검구의 개방에 의해 산소와 반응하거나 건 조기 출구의 슈트 (Shoot)와 컨베이어에서 정전기 등의 불씨와 접촉하여 분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.
- (다) 건조기 사이드와 하부 롤러에 대한 그리스 작업 시 작업자가 롤러에 끼일(협 착) 위험이 있다.
- (라) 작업자가 건조슬러지 수분 확인을 위한 샘플링 시 이송컨베이어 스크류에 끼일(협착) 위험이 있다.
- (마) 작업자가 천정크레인 운전·정비 등의 작업 시 안전난간 미비로 떨어짐(추락) 위험이 있다.
- (바) 작업자가 건조슬러지 이송배관 등의 막힘 제거 작업 중 이송배관에서 떨어짐 (추락) 위험이 있다.

(2) 탄화로

P - 156 - 2017

- (가) 하수슬러지 탄화설비의 폭주적인 진행으로 탄화로 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배기가스 처리계통과 밀봉부분이 소손되어 열분해가스의 누설이 발생할 수 있 다.
- (나) 탄화로에서 발생하는 열분해가스의 성분은 일산화탄소와 메탄 등을 다량 함유 하고 있어, 열분해가스의 누출로 인하여 폭발과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.
- (다) 탄화로의 점검구에서 기밀성 저하와 투시창 유리의 파손부에서 열분해가스가 누설될 경우 작업자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.
- (라) 정비작업 중 탄화로 출입 시 작업자가 탄화로에서 떨어질(추락) 위험이 있다.
- (마) 작업자가 탄화로나 재연소로의 비산 재 청소시 발생하는 분진에 의해 진폐증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.

(3) 열분해가스 연소로

- (가) 열분해가스의 질적 또는 양적 변동에 의해 연소가 중단되어 불꽃이 꺼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열분해가스가 공급되는 경우, 연소실의 가연성 가스가 충만한 상태가 되며, 이때 불씨가 유입되면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.
- (나) 작업자가 연소공기예열기 비산재 청소 시 발생하는 분진에 의해 진폐증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.
- (다) 작업자가 열분해가스 연소로에서 발생하는 연소가스의 처리시설에서 수산화나 트륨에 노출되어 호흡기나 피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.
- (라) 작업자가 집진기의 백필터 맨홀 개방 시 백필터 상부에서 떨어질(추락) 위험이 있다.

(4) 슬러지 저류조

- (가) 하수슬러지 탈수케이크 저장 시 악취가 발생하여 작업자의 건강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.
- (나) 하수슬러지 탈수케이크 저장설비에 슬러지를 장시간 저장할 경우 슬러지가 부 패하여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.

(5) 탄화물 저장조

(가) 하수슬러지 탄화물 저장설비에 탄화물을 장시간 저장할 경우 자기발열에 의하여 발화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.

P - 156 - 2017

(나) 하수슬러지 탄화물의 저장 시 과잉 압축이 될 경우 탄화물이 파쇄되어 분진이 발생할 수 있다.

(6) 이송설비

- (가) 열분해가스가 이동하는 덕트의 경우, 타르 고착과 분진 퇴적 등이 발생하기 쉬워 덕트 막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, 이로 인하여 국부 과열과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다.
- (나) 하수슬러지 탈수케이크가 이동하는 이송배관의 경우, 탄화설비의 운전이 중단 되는 기간 중 이송배관 내 잔류하는 슬러지가 밀폐상태에서 부패하여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.
- (다) 하수슬러지 탄화물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냉각되지 않는 경우 자기발열 에 의하여 이송 중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.

5. 하수슬러지 탄화설비의 안전조치

(1) 건조로

- (가) 하수슬러지 탈수케이크의 건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분무 소화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나) 분진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 등에 의한 정전기 발생 방지조치와 분진에 의한 폭발 위험성이 큰 경우는 전기설비를 방폭구조로 하여야 한다.
- (다) 건조로의 공기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하수슬러지 케이크의 정량공급설비를 불활성가스로 주기적으로 퍼지하여야 한다.
- (라) 건조로의 점검을 위하여 점검구를 개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, 건조로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고 온도가 충분히 내려갈 때까지 점검구를 개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마) 건조로는 불연성 재료로써 최대운전 온도에서의 열팽창에 의한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·제작되어야 한다.
- (바) 건조로의 내부는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.
- (사) 건조로는 내부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.
- (아) 건조로 내부의 온도를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내부의 온도가

P - 156 - 2017

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- (자) 건조로의 감시창·출입구 및 배기구 등과 같은 개구부는 발화 시에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
- (차) 기타 그 밖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"건조설비"에 따라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(2) 탄화로

- (가) 하수슬러지의 탄화과정에서 발생되는 열분해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압 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나) 탄화로 내부의 온도를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다) 열분해 탄화과정에서의 비 이상적인 급격한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 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라) 탄화로의 공기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조슬러지의 정량공급설비를 불활성가 스로 주기적으로 퍼지하여야 한다.
- (마) 열분해가스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큰 경우는 전기설비를 해당 열분해가스에 대해 방폭성능을 가진 구조로 하여야 한다.
- (바) 탄화로의 경우 열분해가스의 누설 및 공기의 유입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, 탄화로 회전부의 밀봉부분과 공급장치에서의 기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한다.
- (사) 탄화로의 내압이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압력 일지라도 점검구 등의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(아) 탄화로의 감시창·출입구 및 배기구 등과 같은 개구부는 발화 시에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

(3) 열분해가스 연소로

- (가) 연소장치의 이상 연소 방지를 위하여 항상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파일럿 버너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나) 열분해가스 연소로의 이상 연소 발생 시 신속하게 연소로 내의 압력을 감지하여 대기 중으로 안전하게 방출하기 위한 방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
P - 156 - 2017

- (다) 열분해가스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큰 경우는 전기설비를 해당 열분해가스에 대해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로 하여야 한다.
- (라) 연소로에는 각 버너 마다 연료의 연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마) 보조연료로 기체연료 및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소용 공기 공급휀 또는 배기휀이 작동하지 않으면 보조연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연동되어야 한다.
- (바) 다음 각호와 같은 연소로의 이상 시 자동으로 보조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1) 공기 공급휀, 배기휀 또는 순환휀의 고장
 - 2) 탄화로내의 온도이상 상승
 - 3) 전기공급 중단
 - 4) 불꽃감지기 (Flame Detector) 작동
- (사) 긴급차단밸브는 가능한 버너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자) 기체연료 배관에 설치한 긴급차단밸브는 연료의 누설시험을 위하여 긴급차단 밸브 다음에 차단밸브를 설치하고, 사이에 시험 콕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
(4) 슬러지 저류조

- (가) 탈수케이크 저류설비에는 가스를 제거하는 관을 설치하여 설비의 휴지 시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가스를 제거하여야 한다.
- (나) 탈수케이크 저류설비에는 가스농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기용 흡인구 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다) 탈수케이크 저류설비내의 공기를 열분해가스 연소로의 연소공기로 이용할 경 우 가연성 가스농도의 관리를 위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(5) 탄화물 저장조

- (가) 하수슬러지 탄화물의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 탄화물 시설 내 온도상승을 감지하기 위한 온도측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나) 저장설비의 온도 상승 시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소 퍼지 또는 살수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다) 탄화물의 저장설비의 경우 저장설비의 높이와 쓸모없는 공간(dead space)를 제한하여 탄화물의 과잉 압축과 장기간 체류를 방지하여야 한다.

P - 156 - 2017

(6) 이송설비

- (가) 하수슬러지 탄화물이 저장설비에 유입되지 이전에 충분히 냉각될 수 있도록 탄화로에서 저장설비로의 탄화물 이송설비에 냉각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나) 탈수케이크 이송배관은 완전한 밀폐부분을 피하기 위하여 게이트 밸브 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.
- (다) 탈수케이크 이송배관에 압력계 및 가스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배기장치를 설치한다.
- (라) 열분해가스 이송덕트는 탄화로의 기밀상태를 점검할 때 함께 주기적으로 청소 를 하여야 한다.
- (마) 열분해가스 이송덕트는 가스온도의 유지를 위한 보온설계와 청소 및 점검을 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.

6. 하수슬러지 탄화설비의 작업자 안전대책

- (1) 천정크레인, 이송배관, 탄화로 백필터 등 고소작업이 실시되는 설비에는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(1)의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,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3) 건조기 사이드나 하부 롤러 및 이송컨베이어 스크류 등 근로자가 점검 및 정비 등 의 작업 시 끼일(협착)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을 실 시하여야 한다.
- (4) 설비 가동 중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근로자가 위험 부분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·울·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유해가스나 분진 등의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공정 및 설비는 유해물질의 가스 ·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환기나 배기가 원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, 반드시 방독마스크나 송기마스크 등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와 눈과 피부 보호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.
- (7) 기타 그 밖의 사항은 KOSHA GUIDE "연소 소각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

P - 156 - 2017

(VOC) 처리설비의 기술지침"의 4에서 규정하는 소각설비의 안전·방호조치를 참조하도록 한다.